

2025년 꼭 알아야 할 고용·노동정책 및 제도



I. 임금·근로시간



1. 2025년 적용 최저임금

- 주요내용
 - 시간급 10,030원(24년 9,860원), 일급 환산액 80,240원(8시간 기준), 월 환산액 2,096,270원(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,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
- 참고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정보공개 → 법령정보 → 훈령·예규·고시
- 문의 :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(☎ 044-202-7555)

2. 통상임금 범위 확대

- 주요내용
 - 재직·근무일수 등 조건부지급 상여금이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해당 (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, '24.12.19.)

통상임금 확대범위 예시

- ① (재직 기준) 추석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
- ② (근무일수 기준)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정기상여금

〈통상임금이 산정기준이 수당 또는 급여〉

- 해고예고수당,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, 연차유급휴가수당, 육아휴직급여, 출산전·후 휴가급여

- 대법원판결 선고일('24.12.19.) 이후 산정하는 통상임금부터 법리 적용

- 참고 :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→ 소식 → 보도자료 → 언론보도해명('24.12.19.)
- 문의 :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(☎ 044-202-7529)



3. 상습 임금체불 제재 강화

○ 주요내용

- 상습체불 사업주* 신용제재, 정부지원 제한, 공공입찰 불이익
* 1년간 ①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(퇴직금 제외) 또는 ② 5회이상 체불 & 체불총액 3천만원(퇴직금 포함)이상인 경우
-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및 출국금지
- 근로자는 체불*로 인한 손해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
* ①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②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③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

○ 참고 : 국가법령정보센터 → 근로기준법('25.10.23시행)

○ 문의 :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(☎ 044-202-7529)

4.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(푸른씨앗) 가입 사업주 지원

○ 주요내용

- 가입자 1명당 최대 27만 3천원 사용자 부담금 지원(사업별 30명 한도)
- 2025년 가입한 사업장은 가입시부터 3년간 기금운영 수수료 0%로 감면



푸른씨앗이란?

근로복지공단(이하 근로복지공단)이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, 전문자산운용 기관에 기금 운용을 위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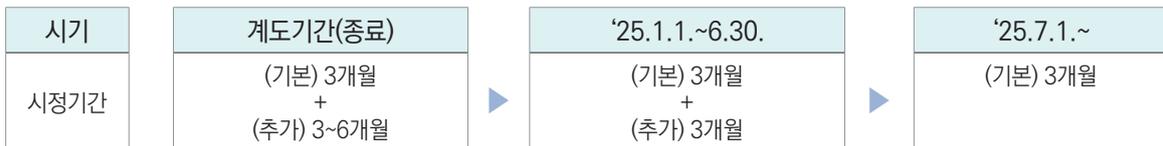
○ 참고 :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홈페이지 → 고객센터 → 공지사항

○ 문의 :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콜센터 (☎ 1661-0075)

5.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

○ 주요내용

- 계도기간('23.1.1.~'24.12.31.)에 적용되던 ▲ 장시간 정기근로감독 대상 제외 ▲ 근로시간 한도 위반 적발 시 추가 시정기간 부여 조치 종료
- 다만, 추가 시정기간은 기업 사정을 고려해 필요시 한시적으로 부여('25.1.1.~6.30.)



○ 참고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뉴스·소식 → 보도·설명 → 보도자료('24.12.26.)

○ 문의 :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(☎ 044-202-7982)

II. 산업안전



1.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화

○ 주요내용

- 폭염·한파(고열·한랭)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* 부과

* 구체적인 사업주 의무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마련 중(별도 안내)

- 보건조치 위반 시 5~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~1억원 이하 벌금(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, 제168조)

○ 참고 : 국가법령정보센터 → 산업안전보건법('25.6.1시행)

○ 문의 :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(☎ 044-202-8891)

2.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변경

○ 주요내용

- 인정심사 기준 : 70점 → 90점

- 사후관리 방식 : 인정사업장 20% 선정 → 모든 인정사업장

- 개선확인 : 인정사업장 점검 거부, 지적사항 미이행 시 인정취소

○ 참고 : 고용노동부 누리집 → 정보공개 → 예산·법령정보 → 훈령·예규·고시

○ 문의 :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(☎ 044-202-8923)

3. 중소기업 안전일터 조성 지원

사업명	지원분야	지원내용(품목)	지원금액
안전동행 지원사업	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격차 완화	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, 원가검토비용	최대 1억원 (자부담 50%)
	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		최대 8,000만원 (자부담 50% 내외)
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	제조·서비스업 고위험 개선	위험기계 방호장치 등 안전설비	최대 3,000만원 (자부담30%)
	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	시스템비계, 시스템 동바리 등 건설현장 재해예방설비	최대 9,000만원 (품목별 자부담 상이)
	스마트 안전장비 지원	스마트안전 지정품목 37종	최대 3,000만원 (자부담20%)
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	건강일터 조성지원(환기장치)	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	최대 5,000만원 (자부담50~70%)
	온열질환 예방설비 지원	이동식 에어컨 등	미정
산재예방시설 용자지원	산재예방시설 용자지원	위험작업환경 개선 비용 용자 연리 1.5%(거치3년, 상환7년)	최대 10억원

○ 참고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뉴스·소식 → 보도·설명 → 보도자료('24.12.31.)

○ 문의 : 안전동행 지원사업 (☎ 1644-4555), 안전일터 지원사업 (☎ 1544-3088), 건강일터 지원사업 (☎ 1644-8835), 산재예방 용자지원 (☎ 1544-3088)

4.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지원

○ 주요내용

-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50만원 지원(총 운영비의 80% 수준)
- 동 사업에 참여한 중기중앙회 정회원 대상 운영비 추가지원 예정(별도안내)

○ 참고 : 안전보건공단 → 알림소식 → 공지사항 → 공지자료('24.12.20.)

○ 문의 : 안전보건공단 (☎ 052-703-0769),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(☎ 02-2124-3272)



Ⅲ. 고용·훈련



1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

○ 주요내용

- (I 유형) 5인 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사업주에게 장려금(1년간 최대 720만원) 지급
 - (II 유형^{신설})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*의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채용장려금(1년간 최대 720만원) 및 장기근속 인센티브(2년간 최대 480만원) 지원
- * 조선업, 뿌리산업, 물류운송업, 보건복지업, 음식점업, 농업, 건설업, 해운업, 수산업, 자원순환업(부처합동 일자리 TF 선정, '23.7)

○ 참고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뉴스·소식 → 보도·설명 → 보도자료('24.12.31.)

○ 문의 :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(☎ 044-202-7441)

2.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○ 주요내용

-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*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(신규 채용 근로자당 월 30~60만원) 지급
- *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, 중증장애인,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, 섬 지역 거주자 등

○ 참고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뉴스·소식 → 공지사항('24.12.31.)

○ 문의 :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(☎ 044-202-7218)

3. 고용유지지원금 지원

○ 주요내용

- 매출액 감소 등 사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(휴업·휴직)를 통해 근로자를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·휴직수당의 2/3 지원(1일 6.6만원, 연간 180일 한도)

○ 참고 : 고용24 → 이용안내 → 정책/제도 → 고용정책 → 제도 검색

○ 문의 :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(☎ 044-202-7219)

4.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

○ 주요내용

- (계속고용장려금) 정년 제도를 운영중이며, 정년도래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 지원(3년간 최대 1,080만원)
- (고용지원금) 신청 분기 월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, 증가 인원 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(2년간 최대 240만원)

○ 참고 : 고용24 → 이용안내 → 정책/제도 → 고용정책 → 제도 검색

○ 문의 :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(☎ 044-202-7463)

5. 「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」 활용 지원

○ 주요내용

-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(ATS*)을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 대상 서비스 사용료의 80%(최대 40만원) 지원
* 시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(Applicant Tracking System)

○ 참고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뉴스·소식 → 보도·설명 → 보도자료('24.12.31.)

○ 문의 :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(☎ 044-202-7344)

6.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

○ 주요내용

- 지역별 고용센터 담당자가 방문하여 사업장별 구인 애로 요인 진단,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인재 매칭 등 1:1 맞춤형 서비스 제공

○ 참고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→ 뉴스 → 정책뉴스('24.9.25.)

○ 문의 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☎ 1350)

7. 중소기업 근로자 역량강화 지원

○ 주요내용

- 중소기업 내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담 주치의를 지정하여 기업 HRD역량개발 지원 밀착 관리(최대 3년) 등

○ 참고 : 한국산업인력공단 → 사업소개 → 능력개발전담주치의

○ 문의 :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(☎ 1644-8000)



IV. 일·가정 양립



[사업주 지원]

1.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

구분	출산전후 휴가	육아휴직	육아기 근로시간단축
육아휴직지원금 육아기단축지원금	-	월 30만원 (특례3개월 월200만원) (남성 1~3번째 월 10만원 추가)	월 30만원 (1~3번째 월 40만원)
대체인력지원금 (고용+파견사용)	월 120만원	월 120만원	월 120만원
대체인력문화확산지원금	-	200만원 (3, 6개월 시점 각 100만원)	-
동료 업무분담지원금	-	월 20만원	월 20만원

- 참고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정책소개 → 정책자료실('25.1.1.)
- 문의 :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 (☎ 044-202-7474)

2. 워라벨/일·가정 양립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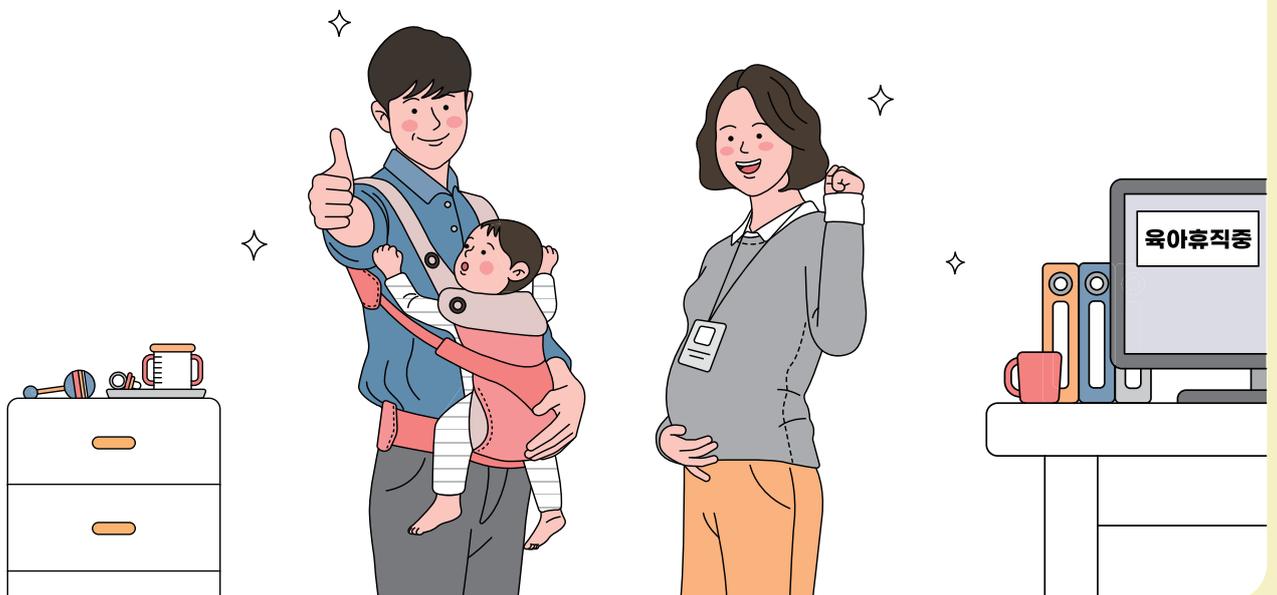
구분	지원내용	지원금
일·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	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취득·사용하는 인프라 투자비용 일부 지원	사업주 투자비용 50~80%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
유연근무제 장려금	유연근무(재택, 원격, 시차출퇴근, 선택) 활용 비용 지원	월 최대 60만원
워라벨일자리 장려금	전일제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시 지원	월 최대 50만원

- 참고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뉴스·소식 → 공지사항('24.12.31.)
- 문의 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☎ 1350)

[근로자 지원]

구분	제도명	내용	시행
임신기	임신기 근로시간 단축	- 임신 후 12주 이내, 32주 이후 임신근로자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(고위험 임신질환은 모든 기간)	'25.2.23.
	난임치료휴가	- 난임치료 6일(최초 2일 유급) 휴가 -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2일 정부 급여 지원	'25.2.23.
출산기	출산전후휴가	- 출산 전·후 90일(다태아 120일) 휴가 -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월 최대 210만원 지급 - 미숙아 출산 시, 100일 사용 가능	'25.2.23.
	배우자 출산휴가	- 배우자 출산 시 20일 휴가 -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정부 급여 지원, 3회 분할, 120일 이내 사용	'25.2.23.
육아기	육아휴직	- 1년 6개월*, 3회 분할 가능 * 한부모·중증장애아동 부모이거나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	'25.2.23.
	육아휴직 급여	- (1~3월) 최대 250만원, (4~6월) 최대 200만원, (7월~) 최대 160만원 지급/사후지급금 폐지	'25.1.1
	육아기 근로시간 단축	- 만12세(초6) 이하 자녀 대상 최대 3년	'25.2.23.
	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	- 매주 최초 10시간(상한 220만원)	'25.1.1

- 참고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정책소개 → 정책자료실('24.12.24.)
- 문의 :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(☎ 044-202-7476, 7412, 7471)



V. 외국인력



1. 2025년 외국인력 도입규모

○ 주요내용

- 일반 외국인근로자(E-9) 총 도입규모 130천명

합계	제조업	조선업	건설업	농축산업	어업	서비스업	탄력배정
130,000 명	72,000 명	2,500 명	2,000 명	10,000 명	8,500 명	3,000 명	32,000 명

- ※ 제조업 : 광업 포함, 농축산업 : 임업 포함, 서비스업 : 음식점업 포함
- ※ 탄력배정분 :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
- ※ 신규·재입국 인원을 포함한 수치임

- 참고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뉴스·소식 → 보도·설명 → 보도자료('24.12.20.)
- 문의 :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(☎ 044-202-7156)

2.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신청범위 확대

○ 주요내용

- 전국 한식업+외국식업 중 업력(業歷) 5년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직종으로 비전문취업(E-9) 신청 범위 확대
- 음식점업 사업주에게 고용허가제 관련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농식품부·외식업 협회 주관 무료 교육 신설·제공 예정

- 참고 : 고용24 → 이용안내 → 정책/제도 → 고용정책 → 제도 검색
- 문의 :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과 (☎ 044-202-7735)

3. 뿌리업종 중견기업 고용허가제 적용

○ 주요내용

- 제조업(300인 이상) 중 뿌리업종이면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에 비전문취업(E-9) 및 방문취업(H-2) 고용 허용

- 참고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뉴스·소식 → 보도·설명 → 보도자료('24.11.21.)
- 문의 :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(☎ 044-202-7153)

4. 숙련기능인력(E-7-4) 제도개선

○ 주요내용

- 2025년 발급규모 : 3.5만명 ('24년과 동일)

-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요건을 사후에 확인하는(전환 후 2년 내) 특례제도 한시적 운영(~'26.12.31)

※ 단, 가족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,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만 추가 체류기간 연장

-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장 추천이 있는 경우 전환 체류 요건 완화(4년→3년)

○ 참고 : 중소기업중앙회 → 지원사업 → 외국인력 고용지원 → 공지사항

○ 문의 : 법무부 체류관리과 (☎ 02-2110-4068),
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(☎ 02-2124-3282)

